##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8 발의연월일: 2020. 6. 8.

발 의 자:서영교・이정문・안민석

전재수 · 박홍근 · 이용빈

김철민 · 천준호 · 안규백

박찬대 • 윤관석 • 김병기

민홍철 · 홍영표 · 송재호

김승남 · 양향자 · 고영인

박 정・맹성규 의원

(20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과 같은 디지털성범죄가 계속 발생하며 이에 연루된 유료회원이 100여명이 넘어가고 공익근무요원, 군인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검거되고 있음. 또한 가해자 중 30% 이상이 미성년자로 밝혀지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성장기에 올바른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의 자격은 더욱 엄격해야 할 것임.

이에 성범죄로 인한 처벌 받은 사람 또는 대마·마약·향정신성의 약품 중독자의 경우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여 교원 임용뿐만 아니라 교원 자격을 이용한 관련 분야 취업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원의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2조의2(교원 자격 취득 결격사유 등) 별표 2의 교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22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공 무원에게 제22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 犯)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22조의2(교원 자격 취득 결격사
	유 등) 별표 2의 교사 자격을 취
	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교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
	<u>다.</u>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u>중독자</u>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
	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
	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u>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u>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
	<u>상 성범죄</u>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

<신 설>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22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에게 제22조의2제3
호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한 벌금형
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
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